

의안번호	2210378
의 퇴 인	전현희의원
회 답 일	2025. 6.24.
추 계 번호	25D2774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 수립, 알오티씨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400만원, 2031년 5,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억 9,000만원(연평균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 (안 제7조)	35	0	0	0	0	35	7
알오티씨 발전위원회 (안 제8조 및 제9조)	15	15	15	15	15	75	15
실태조사 (안 제11조)	34	35	36	37	38	180	36
합계	84	50	51	52	53	290	58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수립(안 제7조), 알오티씨 발전위원회(제8조 및 제9조), 실태조사(안 제12조)에 한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7조(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알오티씨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씨전역자 등의 지원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안 제8조(알오티씨 발전위원회) 및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기본계획,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씨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이 공동으로 되며,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7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 회장, 그리고 알오티씨·국방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됨
3	안 제11조(실태조사)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알오티씨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알오티씨 교육생 및 알오티씨 전역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47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음
4	안 제12조(학군단의 설치)부터 안 제26조(알오티씨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까지	(안 제12조)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하며, 알오티씨 교육과정은 대학 3학년부터 실시하는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과 대학 1·2학년부터 실시하는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으로 구분함 (안 제20조 및 제21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씨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교내교육 및 입영교육 수당, 품위유지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씨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임용하되,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복무, 장기지원 알오티씨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장기복무를 하도록 하며, 복무기간동안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야간수업 대학원에 국한함)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 알오티씨 교육생이 해당 군사교육(교내 군사교육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한 사상, 부상 등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실시하고, 국가는 알오티씨 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5	안 제31조(알오티씨 인턴보조금 지원)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알오티씨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시설·장비이용,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6	안 제34조(취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7	안 제42조(취업활동지원)부터 안 제45조(대부 지원)까지	(안 제42조)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4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44조)국가는 복무연장 알오티씨전역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안 제45조)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음
8	안 제5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씨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9	안 제58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10	안 제64조(재원)	국가보훈부장관은 알오티씨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11	안 제82조(추모공원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12	안 제83조(알오티씨 기념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부터 안 제86조(전담조직의 설치)까지	(안 제8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에 알오티씨와 관련한 시설물이나 기념관·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음
		(안 제84조)국가는 알오티씨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알오티씨의 문무겸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85조)국가는 알오티씨 제도와 교육훈련, 알오티씨 전역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안 제86조) 국방부장관은 효율적인 알오티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알오티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
2	안 제8조(알오티씨 발전위원회) 및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
3	안 제11조(실태조사)	○	-
4	안 제12조(학군단의 설치)부터 안 제26조(알오티씨 교육 요원에 대한 수당 등)까지	×	이미 설치된 학군단에 수업료 감면, 피복 제공, 생활 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지원의 범위, 지원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장기지원 알오티씨교육과정을 마친자에게 장기복무를 하도록 할 경우 장기의무복무자 수의 증가로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 등 제반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장기복무자 비율 조정, 임관구분별 획득인원, 양성교육체계 등 다양한 정책이 연쇄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 추계 곤란
5	안 제31조(알오티씨 인턴보조금 지원)	×	인턴을 채용하는 민간기업의 수, 인턴 인원, 평균 급여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6	안 제34조(취업지원)	×	취업지원 대상자 수, 취업지원의 내용과 범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7	안 제42조(취업활동지원)부터 안 제45조(대부 지원)까지	×	취업활동 지원, 창업지원, 대학원 교육지원, 대부지원의 대상자 수, 대상자 1명당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8	안 제5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무상대부 항목, 대상 항목의 기존 수입 발생 여부, 평균 수입 감소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9	안 제58조(보조금)	×	보조금 교부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10	안 제64조(재원)	×	공제회 사무소 위치, 인력 규모 등 운영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11	안 제82조(추모공원사업의 지원)	×	추모공원사업의 내용과 범위, 사업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2	안 제83조(알오티씨 기념시 설물 설치 등의 특례)부터 안 제86조(전담조직의 설치)까 지	×	기념물 설치 여부 및 규모, 국제협력 관련 유사사업의 확대 범위, 전담조직 설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 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수립(안 제7조), 알오티씨 발전위원회(제8조 및 제9조), 실태조사(안 제11조)에 한하여 추계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의 경우, 기존에 유사한 지원이 존재하여 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지원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신규 지원의 경우에도 대상자 수,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본 추계에서는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500만원으로 추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 국방부의 2025년 예산에 따르면, 평균 정책연구용역비 3,316만원²⁾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7년 3,500만원으로 예상

나. 알오티씨 발전위원회(안 제8조)

- 본 추계에서는 알오티씨 발전위원회에 15명의 민간위원이 활동하고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알오티씨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500만원으로 추정
 - 회의 참석수당은 2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1,500만원(=15명×25만원×4회)

다. 실태조사(안 제11조)

- 본 추계에서는 알오티씨 교육생 및 알오티씨 전역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알오티씨 교육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400만원, 2031년 3,800만원으로 추정
 - 유사사례인 국방부의 2020년 군인권실태조사에 편성된 예산은 2,700만원이고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표 2] 실태조사 비용 추정: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실태조사	34	35	36	37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 수립, 알오티씨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400만원, 2031년 5,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2) 2024년 국방정책활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국방정책연구 사업에 12건의 정책연구용역비로 총 3억 9,792만원을 편성하여 건당 평균 정책연구용역비는 3,316만원임

[표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	35	0	0	0	0	35
알오티씨 발전위원회	15	15	15	15	15	75
실태조사	34	35	36	37	38	180
합계	84	50	51	52	53	2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syjeon@assembly.go.kr